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2. 11.



김 장 관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김장관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·검사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
- 안 제7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##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○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【김장관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 번호	00922051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11. 4.

발의자: 김장관, 서민우, 강한곤, 김기열,  
박종길, 이선주, 남현주, 정순옥

### 1. 제정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·검사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, 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: 불임

- 나. 관계법령

- 1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임무), 제16조(활동비 지원)
- 2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(임무)

- 다. 비용추계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의용소방대”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범위)**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**제4조(지원절차 등)**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  2. 사업계획서
  3.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해야 한다.

**제5조(중복지원 금지)**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보고·검사 등)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용 소방대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,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법 제31조 등에 따른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제6조에 따른 보고·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5.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화재 예방,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 관계 법령 】

### 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7조(임무)**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제16조(활동비 지원)**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**제13조(임무)**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